

중소기업을 설립한 자가 『중소기업기본법』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기업을 효율적으로 성장·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“2014년도 「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」 운영계획”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4년 1월 27일

중소기업청장

중소기업진흥공단 · 신용보증기금 · 기술보증기금 이사장

## 2014년도 「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」 운영계획

### 1. 개 요

- 사람이 건강관리를 통해 성장하고, 수명이 연장(평균 17년) 되듯이, 기업 중심의 종합병원식 ‘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’ 운영을 통해
  - 중소기업의 기초 체질을 강화하고, 위기관리 역량을 높여 생존율을 제고하기 위함

###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이란?

◆ 종합병원식 건강검진 체계와 같이, 기업경영 전반에 대한 「진단⇒ 처방⇒치유」 방식의 3단계 『문제해결형 시스템』

#### 기업건강 진단



- 위기관리역량진단
- 기업경영전반 분석 (기술·경영전문가)

#### 처방전 발급



- 종합진단표 작성
- 성장로드맵·처방전 작성 (진단기관)

#### 맞춤형 치유



- 자금, 보증, R&D, 마케팅,
- 공정혁신, 정보화, 사업전환 등 (지원기관)

## < 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체계도 >

| 구 분           | 수 행 방 법   | 비 고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사업공고          | ○ 언론, 온라인 매체를 활용하여 공고   | 공동운영기관                 |
| ▼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청·접수         | ○ 진단기관 상담·신청<br>* 진단기관: 지방청 중진공 지역본부, 신보 영업점, 기보 기술평가센터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업→진단기관                |
| ▼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진단 실시         | ○ 전문가 배정 및 진단 실시(최대 6MD 이내)<br>* 필요시 공동진단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진단기관<br>(전문가)          |
| ▼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진단완료 및 처방전 발급 | ○ 진단완료 및 진단보고서 작성<br>○ 처방전 작성·발급 및 위원회 심의 요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전문가<br>진단기관            |
| ▼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처방전 심의·의결     | ○ 맞춤형 치유사업 및 기업 개선과제 의결<br>○ 진단기업 및 지원기관으로 추천서 송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위원회<br>(기업건강관리팀)       |
| ▼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맞춤형 치유신청      | ○ 지원기관에 추천서 제시  | 진단기업                   |
| ▼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맞춤형 치유        | ○ 유효기한 내 맞춤형 치유사업 실시 및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  | 지원기관<br>진단기업           |
| ▼             |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후관리 및 성과점검   | ○ 진단기업 맞춤형 치유 추진실적 통보(매월 10일)<br>○ 진단기업 사후코칭 보고서 작성·제출<br>○ 진단기업 사후관리 및 성과점검 실시 | 지원기관<br>전문가<br>기업건강관리팀 |

## 2. 시스템 단계별 내용

### 가. 기업건강 진단

#### 1) 신청대상 및 신청접수

##### 가) 신청대상

□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

- 단,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(별표 1) 이외의 업종,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한 기업(별표 2)은 신청대상에서 제외

□ 은행권의 정기 또는 수시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, B등급(Fast-Track 프로그램 적용), C등급(Work-out 선정), D등급(기업회생절차 등)으로 분류된 구조적 경영애로 중소기업(이하 “구조적 경영애로기업”이라 함)

\* B등급 : 부실징후기업이 될 가능성이 큰 기업

C등급 :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기업

D등급 : 부실징후기업에 해당하며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없는 기업

☞ 신청대상 :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된 기업

- ① C등급중 ‘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’에 따라 채권은행자율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관리대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
- ② B등급중 ‘중소기업 Fast Track 프로그램 공동운영 지침’에 따라 Fast-Track 자율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공동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
- ③ 자체 정상화 또는 기업회생절차 신청 권고 기업

☞ 신청제외

- ① 정상영업 중인 기업(A등급)
- ② C등급 중 공동관리대상기업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
- ③ B등급 중 Fast-Track 프로그램 공동지원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기업
- ④ D등급 중 기업회생 절차 개시 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는 기업

-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에 대해서는 진단신청 제한 기업(별표2) 중 ⑥호와 ⑧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

- 뿌리산업(주조, 금형 등) 영위 소기업(상시근로자수 50인 이하) 및 전략 산업 창업기업(업력 7년 미만), 적합업종(제조업에 한함) 우선 지원

1) 뿌리산업 : 금형, 주조, 소성가공, 용접, 열처리, 표면처리  
 2) 전략산업 : ① 녹색·신성장동력, ② 부품·소재, ③ 지역전략·연고산업, ④ 지식서비스, ⑤ 문화콘텐츠, ⑥ 바이오, ⑦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  
 \* 뿌리산업, 전략산업, 적합업종 해당여부는 별표3 참조

## 나) 신청·접수

- (일시적 경영애로기업) 기업건강 진단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별지 서식의 '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'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진단 기관에 상담·신청

\* 접수마감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영업시간까지 접수

☞ 기업건강 상담·신청 및 접수처(별표 4)

① 지방중소기업청, ②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(지)부, ③ 신용보증기금 영업점, ④ 기술보증기금 본부평가센터 또는 기술평가센터

- (구조적 경영애로기업) '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' 또는 'Fast-Track 프로그램 자율협의회'에 '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 의결'을 거쳐 주채권 은행의 추천을 받은 중소기업이, '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'를 작성하여 관할 소재지의 진단기관에 상담·신청
- 기업건강 관리가 필요한 중소기업에 대해 진단기관에서 기업건강 진단 신청·접수

## 다) 신청·접수기간

-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: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1~10일
- 구조적 경영애로기업 : 2월부터 10월까지 매월 수시
- 건강관리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2호 「건강관리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」를 진단기관에 제출  
 \* 단, 신청일 현재 기준, 1년 이내 건강진단 완료기업, 건강진단 제한업종(예시 : 건설업, 소매업 등) 및 건강진단 제한 기업 등은 기업건강 진단 생략

## 2) 진단 실시

### 가) 진단착수

- 진단기관은 일시적 경영애로기업의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(공휴일을 포함하여 7일 이내)에 내부인력, 외부 전문가 1인 또는 2인이 진단을 착수할 수 있도록 조치
  -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의 경우 진단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(공휴일을 포함하여 10일 이내)에 진단 착수

### 나) 진단 실시 일수

- 진단 실시 일수는 하루 8Man-Hour 기준으로, 최대 6Man-Day 원칙이며, 진단보고서 작성일은 1MD에 포함

### 다) 진단비용 및 부담

- 진단비용은 30만원/1MD 원칙
- 진단비용 부담
  - 일시적 경영애로기업
    - 3MD 이내 :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진단기관이 부담
    - 4MD 이상 : 4MD 이상인 비용은 진단신청 기업이 부담
      - \* 진단비용을 부담하는 진단신청 기업은 해당 전문가(또는 전문가의 소속사)와 협약을 체결하고, 기업부담금을 납입

#### ☞ 진단실시 일수별 진단신청 기업의 진단비용 부담

- \* 진단일수 4MD : 3MD 비용(진단기관 부담) + 1MD 비용(진단신청 기업 부담)
- \* 진단일수 5MD : 3MD 비용(진단기관 부담) + 2MD 비용(진단신청 기업 부담)
- \* 진단일수 6MD : 3MD 비용(진단기관 부담) + 3MD 비용(진단신청 기업 부담)

- 구조적 경영애로기업
  - 진단예산의 범위 내에서 13MD까지 진단기관이 부담

## 라) 진단방법 및 내용

- (진단방법) 전문가가 진단신청 기업의 현장을 방문하여 진단을 실시하고, 진단 실시 정보를 중진공 진단시스템에 입력·분석
- (진단내용) 기업경영 전반에 관한 현재 상황·위치, 경쟁력, 위기 관리 역량을 종합적으로 분석·진단
  - 기술·산업 분석, 핵심역량분석, 경영성과분석 등
  - 기업 성장통 원인, 위기관리역량 저해 요인 및 개선 포인트 도출
  -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 제시

## 나. 처방전 발급

### 1) 진단보고서 작성

- 전문가는 '진단시스템'을 활용하여 '진단보고서' 작성을 완료(진단시스템에 완료 체크)하고, 진단을 착수한 날로부터 15일(착수일은 포함하되,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)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진단기관에 제출
  - 전문가는 진단보고서 작성을 완료하기 전에 진단기업 및 진단기관에 진단보고서 PT를 의무적으로 실시

#### <진단보고서 주요 내용>

- 1) 기업현황 : 기업개요, 연혁 및 조직, 주주현황, 공정 및 설비현황
- 2) 기업환경 : ① 기술 및 산업분석(제품공급체계, 시장규모 및 기술동향, 산업동향 등), ② 핵심역량분석(기능별 역량분석, 기업경쟁력분석, 기업성과분석 등), ③ 경영성과분석(원가경쟁력, 투자자산효율성, 매출원가 등)
- 3) 개선전략 : 기업성장로드맵 및 개선방향, 세부실천과제
- 4) 심층분석(옵션) : 재무회계, 영업마케팅, 인사조직, 생산관리, 기업특화분야 등

- \*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의 경우, 진단을 착수한 날로부터 30일(착수일은 포함하되,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) 이내에 진단보고서를 진단기관에 제출

## 2) 처방전 작성·발급

- 진단기관은 ‘진단보고서’와 ‘건강관리 처방 매뉴얼’을 참조하여 ‘중소기업 건강관리 처방전’을 작성·발급하고,
  - 신청·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25일(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,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) 이내 위원회에 심의 요청
    - 진단기관은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 진단기업과 사전협의 실시
    - 진단기관은 소관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위원회 개최 이전에도 진단기업 지원 가능
  - \*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의 경우, 신청·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45일(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,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) 이내에 위원회에 심의 요청

### 다. 맞춤형 치유

#### 1) 처방전 심의·의결

- 중소기업 건강관리위원회(이하 ‘위원회’라 한다)는 진단기관의 처방전에 대해 심의·의결
  - 진단기관이 발급한 ‘처방전’에 대해서는 원안 심의·의결 원칙
  - 처방전 중 잘못된 처방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정의결하거나, 추가적인 치유가 필요한 경우에는 치유사업을 추가하여 의결
  -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서는 맞춤형 치유사업이 완료기한 내에 개선토록 권고하는 것을 원칙
    - 다만, 개선권고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치유과제의 선행 개선조건부 맞춤형 치유사업을 의결
- 위원회는 처방전에 대한 원활한 심의·의결을 위해 진단기관 담당자, 전문가, 진단기업 관계자의 위원회 참석을 요청

## 2) 처방전 추천 및 맞춤형 치유

### 가) 처방전 추천

- 지방청(기업건강관리팀)은 진단기업, 진단기관 및 지원기관에 '중소기업 건강관리 추천서'를 신청·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30일(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,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) 이내 송부
  - \* 구조적 경영애로기업의 경우, 지방청 또는 진단기관이 신청·접수를 마감한 날로부터 70일(접수마감일은 포함하되, 공휴일은 포함하지 않음)이내 송부
- 진단기업에 추천서를 송부하는 경우에는 맞춤형 치유사업, 참여 절차, 신청서식 및 유효기한,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내용 등에 관하여 성실히 안내

### 나) 맞춤형 치유

- 진단기업은 맞춤형 치유사업의 유효기한 내에 추천서를 지원기관에 제출하고 맞춤형 치유를 신청
- 지원기관은 진단기업의 '추천서'에 따라 맞춤형 치유 실시(참고)
  - 진단기업은 지원기관이 맞춤형 치유사업의 신청서류의 작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작성·제출
  - 지원기관이 진단보고서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진단기업이 직접 또는 진단기관(사전에 진단기업이 동의한 경우에 한함)에서 제출

### 다) 사후관리

- 진단기업의 '추천서'에 기재된 유효기한 내에 치유사업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, 지원기관의 치유사업 지원실적 및 진단기업 자체 치유과제 이행상황 점검 등 사후관리를 실시



- 진단기업의 맞춤형 치유사업 및 진단기업의 자체 치유과제 추진 상황을 매 반기별로 위원회에 보고
  - 진단기업은 자체 치유과제에 대해 신의와 성실로써 개선기한 내에 이행 →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기업건강관리팀에 서면으로 통보
- 진단기업에 대한 성과점검을 3년간 실시하고, 매년 성과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

#### 라) 전문가 건강관리 코칭 실시

- 지방청은 전문가가 진단을 실시한 진단기업의 처방전 발급내역 및 맞춤형 치유 실시현황 정보를 기업, 전문가, 지원기관 등에 제공
  - 전문가는 진단보고서의 개선방안 및 세부실천과제에 대한 조언, 기업 자체 개선권고과제에 대한 조언 및 추가 애로과제를 발굴하는 등 진단기업에 대한 건강관리 코칭을 실시
  - 전문가는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건강관리 코칭 보고서(2P 이내)를 작성하여 건강관리 홈페이지에 온라인 제출

#### 마) 사후관리 및 건강관리 코칭에 따른 처방전 추가 발급

- 진단기업에 대한 사후관리(지방청) 및 건강관리 코칭(전문가) 결과, 맞춤형 치유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건강관리위원회에서 심의 후 처방전을 추천
  - 단, 공동진단이 필요한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공동진단이 필요한 진단기관에 처방전 추가 발급을 요청
- ※ 공동진단이 불필요한 맞춤형 치유사업에 대해서는 기업건강관리팀에서 추가 처방전을 발급·추천

□ 진단기관은 처방전 추가 발급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진단을 실시하거나 생략 가능(단,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진단기업에 대해서는 진단 생략)

**바) 사후관리, 건강관리 코칭 및 성과점검을 위한 진단기업의 협조**

□ 진단기업은 지방청 사후관리, 전문가 건강관리 코칭 및 한국기업 데이터 성과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고용 및 재무관련 자료(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, 재무제표)를 제출하여야 함

## 참고

## 처방전에 따른 맞춤형치유 실시

| 치유사업         | 치유방식  |
|--------------|---|
| ① 자금         | ○ 중진공에서 진단기업의 정책자금활용계획서를 징구하고, 정책자금 대출  |
| ② 보증         | ○ 신보, 기보, 지역신보에서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진단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보증서부 대출 실시  |
| ③ R&D · 정보화  | <p>○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은 위원회에서 심의·추천 이후 대면평가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서 최종 지원대상 결정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 justify-content: center; gap: 10px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            처방전 심의·추천<br/>(지역 건강관리위원회)           </div> <span>⇒</span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">             대면평가<br/>(전문기관 평가위원회)           </div> <span>⇒</span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e0f0e0;">             지원결정<br/>(지역 건강관리위원회)           </div> </div> <p>*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,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은 전문기관에서 결정</p> <p>○ 기술정보진흥원이 전체 생산공정의 정보화시스템(POP, MES, PDM) 구축 비용의 50% 지원(최대 6,000만원 이내)</p> |
| ④ 국내마케팅      | ○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진단기업의 TV·신문홍보, 공동AS센터, 구매상담회, 마케팅교육, 휴앤쇼핑 등 국내마케팅 지원   |
| ⑤ 해외마케팅      | <p>○ 수출지원센터에서 진단기업의 수출역량강화* 및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2,000~3000만원 범위 내에서 외국어 포장디자인, 해외심층조사, 전자무역서비스, 해외전시회 참가, 검색엔진 상위등록 및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활용</li> </ul> <p>○ 중진공에서 수출인큐베이터, 온라인 수출지원, 해외마케팅을 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[수출인큐베이터] 수출사람방은 즉시 승인, 수출인큐베이터는 공실발생시 우선선정</li> <li>- [온라인 수출지원] 즉시 승인</li> <li>- [해외마케팅 지원] 진단기업 우선선정</li> </ul>   |
| ⑥ 기술·경영 애로지원 | <p>○ 진단기업이 선정한 컨설팅사로부터 「공정혁신 수행계획서」를 제출받아 '수행계획 타당성'을 평가·승인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생산성향상, 품질개선, 공정개선, 원가절감 등 공정혁신 비용의 50~80%지원(최대 1천만원)</li> </ul> <p>○ 비즈니스지원단에서 진단기업 현장을 직접 찾아가 노무, 법무·세무·회계, 기술·특허 등 경영애로 단기간(3일 이내)에 해소</p> <p>○ 공장설립 인·허가에 필수적인 측량과 환경 기능을 구축, 설계도서 및 사전환경·재해영향검토서 작성을 일괄대행</p>  |
| ⑦ 인력/연수      | <p>○ 지방청에서 진단기업 요청 인력을 워크넷 등록, 채용박람회 및 인력지원사업(특성화고, 청년인턴제, 외국전문인력도입 등)을 통해 매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인력을 구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지방청 담당자 지정, 1:1 집중관리</li> </ul> <p>○ 일정요건을 갖춘 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연구개발전담부서 설립안내</p>   |
| ⑧ 사업전환 및 M&A | <p>○ 중진공 지역본부에서 사업전환계획 승인 및 컨설팅·융자지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진단기관에서 공동진단 요청시 중진공에서 '사업전환계획 타당성' 평가 실시</li> </ul> <p>○ M&amp;A 지원센터(중진공, 기보 등)에서 진단기업에 M&amp;A 대상기업 발굴·매칭 및 인수자금 지원(KVIC, 중진공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M&amp;A 처방시에는 진단기업에 대한 밀체자료를 첨부하여 M&amp;A지원센터(중진공)으로 승부</li> </ul>  |

<별표 1>

## 기업건강 진단신청 대상 업종

| 신청대상 업종<br>(표준산업분류번호)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대상 제외  |
|--|--|
| ① 제조업(10~33),<br>광업(05 ~08),<br>운수업(49~52) | ·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(33402中)<br>·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(33409中)<br>· 도로 및 관련시설 운영업(52914)<br>· 주차장 운영업(52915)                       |
| ② 하수처리, 폐기물 처리<br>및 환경복원업(37~39)           | -  |
| ③ 도매 및 소매업(45~47)                          | · 주류, 담배 중개업(46102中)<br>· 귀금속 중개업(46109)<br>· 주류, 담배 도매업(46331, 3)<br>· 사행성 오락게임용품 도매업(46463)<br>· 귀금속 도매업(46492)<br>· 소매업(47) |
| ④ 출판, 영상, 방송통신<br>및 정보서비스(58~63)           | · 불건전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(5821中)  |
| ⑤ 전문, 과학 및 기술<br>서비스업(70~73)               | -  |
| ⑥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<br>지원 서비스업(74~75)            | · 경비, 경호 및 탐정업(보안시스템 서비스업(75320) 제외)<br>· 기타 사업지원 서비스업(759中 전시 및 행사대행업<br>(75992), 포장 및 충전업(75994) 제외)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상기 ① ~ ⑥ 이외의 모든 업종(예, 건설업, 금융 및 보험업 등)은 신청대상에서 제외

<별표 2>

## 기업건강 진단신청 제한 기업

- ① 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치유를 받은 회수가 4회 이상인 기업. 단, 처방전 추가 발급·추천한 경우는 횟수에서 제외
- ② 진단완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. 단, 대표자 변경 등 진단기업의 중대한 변화가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- ③ 진단기관에서 진단 신청·접수가 거절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기업. 단, 그 거절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- ④ 휴·폐업중인 기업
- ⑤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. 단, 세금분납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기업 회생인가 받은 기업 및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이업은 제외함
- ⑥ 전국은행연합회의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의·법정관리·기업회생 신청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. 단, 회생인가 받은 기업,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법인이업은 제외함
- ⑦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
- ⑧ 진단 신청일 현재,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기업. 단, 진단기관의 장이 해당기업의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
  - 가. 2년 연속 매출액이 50%이상 감소한 기업
  - 나.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
  - 다.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또는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

## 중소기업 건강관리 우선지원 업종

### 1 녹색·신성장동력 중소기업

| 구분     | 신성장동력          | 세부분류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|
| 녹색기술산업 | 신재생에너지         | 태양전지, 연료전지, 해양바이오, 해양에너지, 폐자원에너지, 농산바이오매스에너지, 산림바이오매스자원화, 청정석탄에너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탄소저감에너지        | 이산화탄소 포집·저장, 원전플랜트  |
|        | 고도물처리          | 스마트상수도 막여과 시스템, 스마트상수도 수도기자재, 친환경 대체용수 확보를 위한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 기술, 먹는샘물, 해양심층수, 지속가능 물환경을 위한 수생태계 복원기술 |
|        | LED응용          | LED응용   |
|        | 그린수송시스템        | 그린카, 선박·해양시스템, 첨단철도   |
|        | 첨단그린도시         | U-City S/W, U-City IT H/W, U-City IT 융합 H/W, ITS, GIS, 그린홈  |
| 첨단융합산업 | 방송통신융합         | 차세대 융합네트워크, 차세대 무선통신, 방송통신미디어   |
|        | IT융합시스템        | IT융합, RFID/USN, 차세대 반도체, 차세대 디스플레이  |
|        | 로봇응용           | 로봇응용  |
|        | 신소재·나노융합       | 초경량 마그네슘 소재, Ionic Liquid(IL) 소재, 나노탄소 융합소재 분야, 기능성 나노 필름 분야, 나노융합 바이오머신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바이오제약(자원)·의료기기 | 바이오 의약품, 바이오자원·신소재·장기, 바이오매스유래 바이오화학제품, 메디·바이오 진단시스템, 첨단의료영상 진단기기, 고령친화의료기기 및 제품                  |
|        | 고부가식품산업        | 고부가 식품산업  |
| 고부가서비스 | 글로벌헬스케어        | 글로벌 헬스케어  |
|        | 글로벌교육서비스       | 글로벌 교육서비스   |
|        | 녹색금융           | (해당사항 없음)   |
|        | 콘텐츠·소프트웨어      | 콘텐츠, 소프트웨어  |
|        | MICE·융합관광      | MICE, 생태관광  |

- \* 녹색·신성장동력 중소기업의 해당여부는 진단기관 또는 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
- \* 녹색인증기업(녹색기술인증, 녹색사업인증, 녹색전문기업확인)은 '녹색·신성장동력 중소기업' 범위에 포함하여 지원
- \* 녹색·신성장동력 중소기업 관련 표준산업분류는 중소기업청 홈페이지>지원정책>중소기업 건강관리 코너에 별도 공지

## 2) 뿌리산업의 범위

### 1. 주조산업

| 중분류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분류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세분류     |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분류번호 | 산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번호  | 산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번호     | 산업명           |
| 2413 | 철강관<br>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24131 | 주철관<br>제조업                  | 24131101 | 주철관(주조한 것)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113102 | 주철제 관련결구류     |
| 2431 | 철강<br>주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| 24311 | 선철주물<br>주조업                 | 24311101 | 회주물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311102 | 가단주물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311103 | 구상흑연주물(덕타일주물)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312 | 강주물<br>주조업                  | 24312101 | 보통강주물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312102 | 특수강주물(합금강주물)  |
| 2432 | 비철금속<br>주조업                       | 24321 | 알루미늄주<br>물 주조업              | 24321100 | 알루미늄주물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322 | 동주물<br>주조업                  | 24322100 | 동주물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329 | 기타<br>비철금속<br>주조업           | 24329100 | 기타 비철금속주물     |
| 2923 | 금속 주조<br>및 기타<br>야금용<br>기계<br>제조업 | 29230 | 금속 주조<br>및 야금용<br>기계<br>제조업 | 29230101 | 주물주조기계        |

### 2. 금형산업

| 중분류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분류   |                   | 세세분류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분류번호 | 산업명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번호  | 산업명               | 분류번호     | 산업명         |
| 2929 | 기타<br>특수목적용<br>기계<br>제조업 | 29294 | 주형 및<br>금형<br>제조업 | 29294101 | 프레스용 금형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29294102 | 플라스틱용 금형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29294109 | 기타 금형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29294901 | 몰드베이스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| 29294909 | 기타 주형관련 부속품 |

### 3. 열처리산업

| 중분류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분류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세분류     |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분류번호 | 산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번호  | 산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번호     | 산업명        |
| 2592 | 금속 열처리<br>도금 및<br>기타<br>금속가공업 | 25921 | 금속<br>열처리업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|
| 2915 | 산업용 오븐<br>노 및 노용<br>버너 제조업    | 29150 | 산업용<br>오븐 노<br>및 노용<br>버너<br>제조업 | 29150101 | 공업용 노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9150103 | 전기로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9150900 | 노 부속품 및 부품 |

### 4. 표면처리산업

| 중분류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분류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세분류     |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분류번호 | 산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번호  | 산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번호     | 산업명             |
| 2049 | 그 외 기타<br>화학제품<br>제조업              | 20499 | 그 외<br>기타 분류<br>안 된<br>화학제품<br>제조업 | 20499210 | 금속표면처리용 화합물     |
| 2592 | 금속<br>열처리<br>도금 및<br>기타<br>금속가공업   | 25922 | 도금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922    | 도금업    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923 | 도장 및<br>기타<br>피막처리업                | 25923    | 도장 및 기타 피막처리업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929 | 그 외 기타<br>금속가공업                    | 25929100 | 기타 금속처리 제품      |
| 2622 | 인쇄회로기판<br>및<br>전자부품<br>실장기판<br>제조업 | 26221 | 인쇄회로<br>기판<br>제조업                  | 26221101 | 페놀동박적층판 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6221102 | 에폭시동박적층판        |
| 2890 | 기타<br>전기장비<br>제조업                  | 28909 | 그 외<br>기타<br>전기장비<br>제조업           | 28909404 | 전기도금 및 전기분해용 기기 |
| 2929 | 기타<br>특수목적용<br>기계<br>제조업           | 29299 | 그 외<br>기타<br>특수목적<br>용 기계<br>제조업   | 29299104 | 금속 표면처리기        |



5. 소성가공산업

| 중분류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분류   |             | 세세분류     |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분류번호 | 산업명                     | 분류번호  | 산업명         | 분류번호     | 산업명          |
| 2591 | 금속 단조, 압형 및 분말야금 제품 제조업 | 25911 | 분말야금제품 제조업  | 25911100 | 분말야금제품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25912 | 금속단조제품 제조업  | 25912101 | 보통강 단조물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25912102 | 특수강 단조물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25912109 | 기타 철강 단조물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25912201 | 스테인리스 단조물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25912202 | 알루미늄 단조물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25912203 | 동 단조물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25912209 | 기타 비철금속 단조물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25913 | 금속압형제품 제조업  | 25913101 | 자동차용 프레스 가공품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25913105 | 기타 프레스 가공품   |
| 2922 | 가공공작기계 제조업              | 29223 |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| 29223101 | 액압프레스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29223102 | 기계프레스 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29223801 | 금속 단조기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29223802 | 금속 일반기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29223803 | 나사 전조기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29223804 | 금속선 가공기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29223809 | 기타 금속성형기계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| 29223900 | 금속성형기계의 부품   |

## 6. 용접접합산업

| 중분류  |                        | 세분류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세세분류     |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
| 분류번호 | 산업명                    | 분류번호  | 산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| 분류번호     | 산업명          |
| 2049 | 그 외 기타 화학제품 제조업        | 20493 | 접착제 및 젤라틴 제조업               | 20493101 | 천연 접착제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493102 | 합성수지 접착제     |
| 2229 | 기타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        | 22291 | 플라스틱 적층 도포 및 기타 표면처리 제품 제조업 | 22291102 | 접착테이프        |
| 2413 | 철강환 제조업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
| 2429 |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       | 24290 | 기타 1차 비철금속 제조업              | 24290800 | 기타 1차 비철금속제품 |
| 2512 | 금속탱크, 저장조 및 유사용기 제조업   | 25122 | 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 용기 제조업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
| 2513 | 핵반응기 및 중기발생기 제조업       | 25130 | 핵반응기 및 중기발생기 제조업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
| 2599 | 그 외 기타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    | 25999 | 그 외 기타 분류 안 된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   | 25999201 | 용접봉          |
| 2622 | 인쇄회로기판 및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| 26222 | 전자부품 실장기판 제조업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
| 2629 |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
| 2890 |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   | 28909 | 그 외 기타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    | 28909301 | 아크 용접기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8909302 | 저항 용접기    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8909309 | 기타 전기용접기     |
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|
| 2919 | 기타 일반<br>목적용 기계<br>제조업            | 29199 | 그 외 기타<br>일반목적용<br>기계 제조업 | 29199101 | 가스 용접 및 절단기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9199102 | 기타 용접기      |
| 2927 | 반도체 및<br>평판디스플레이<br>제조용<br>기계 제조업 | 29271 | 반도체 제조용<br>기계 제조업         | 29271102 | 반도체 조립 장비   |
|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9271103 | 칩마운터        |
| 3012 | 자동차<br>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
| 3020 | 자동차 차체<br>및<br>트레일러<br>제조업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
| 3032 | 자동차<br>차체용<br>부품 제조업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
| 3111 | 선박 건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
| 3120 | 철도장비<br>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
| 3131 | 항공기,<br>우주선 및<br>보조장치<br>제조업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
| 3132 | 항공기용<br>엔진 및<br>부품 제조업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
| 3191 | 전투용 차량<br>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|

비고

1. 분류와 분류번호는 「통계법」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다.
2. 위 표에 포함된 업종이라도 구조, 금형, 소성가공, 용접, 표면처리, 열처리 등의 공정기술을 활용하지 아니한 업종은 제외한다.

### ③ 부품·소재산업

- 「부품·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“부품·소재” 관련 산업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범위(부품·소재)  | 품목코드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----|
| 섬유제품제조업<br>(17)           | 섬유방적사(천연원료를 제외하고, 기타 방적사는 무기질 섬유사 및 텍스처 사등 가공사에 한한다) | 171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섬유직물(특수직물 및 기타직물은 무기질 섬유직물에 한한다)                     | 172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염색·가공된 섬유사 및 섬유직물(호부, 기타 섬유염색 및 정리 가공품을 제외한다)        | 1740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부직포 및 펠트   | 17993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용 특수사 및 코드직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7994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계용 및 기타 공업용 섬유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7999 |
| 펄프, 종이 및 종이<br>제품 제조업(21) | 공업용 기타 종이 및 판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1129 |
| 화합물 및 화학<br>제품 제조업(24)    | 석유화학계 기초 화합물(유도체에 한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11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기초 유기화합물(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119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기초 무기화합물(유도체 및 화합물에 한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129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무기안료, 염료,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13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합성고무   | 2415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152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초의약품물질 및 생물학적 제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21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농약 원제 및 중간체  | 24312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업용 도료 및 관련제품  | 2432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업용 인쇄잉크   | 24323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계면활성제  | 2433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업용 사진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342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업용 방향유 및 관련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392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접착제 및 젤라틴  | 24393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업용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4399 |
| 화학섬유                      | 2440   |       |
| 고무 및 플라스틱<br>제품 제조업(25)   | 타이어 및 튜브   | 2511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업용 비경화 고무제품   | 2519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업용 기타 고무제품  | 25199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선, 봉, 관 및 호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21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필름, 시트 및 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212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극세사 합성피혁   | 25213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계장비 조립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제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5240 |
| 비금속광물제품<br>제조업(26)        | 공업용 박판유리(두께 1.5mm 이하에 한한다)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611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업용 유리섬유 및 광학용 유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6121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판유리 가공품  | 26122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범위(부품·소재)  | 품목코드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기타 공업용 유리제품<br>공업용 도자기(파인 세라믹을 포함한다)<br>구조용 정형 내화제품(전주내화물에 한한다)<br>기능성석회(형상 및 물성제어된 제품에 한한다)<br>연마휠<br>초미립 비금속광물(평균입경 1.0 $\mu$ m 이하에 한한다)<br>공업용 내화 단열재<br>탄소섬유<br>복합소재 비금속광물   | 26129<br>26213<br>26221<br>26312<br>26991<br>26992<br>26993<br>26994<br>26999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1차 금속산업<br>(27)          | 합금철<br>열간압연 및 압출제품(일반철근, 보통강 형강을 제외한다)<br>냉간압연 및 압출제품(보통강 냉연강판을 제외한다)<br>철강선(보통강철선, 아연도철선, 철조망, 철망을 제외한다)<br>주조한 관연결류<br>강관(전기용접 보통강관을 제외한다)<br>절단가공 및 표면처리 강재(아연도금강판을 제외한다)<br>그 외 기타 철강제품<br>비철금속 제련, 정련 및 합금제품<br>비철금속 압연, 압출 및 연신제품<br>철강 주조제품(회주철을 제외한다)<br>비철금속 주조제품 | 27112<br>27121<br>27122<br>27123<br>27131<br>27132<br>27191<br>27199<br>2721<br>2722<br>2731<br>2732 |
| 조립금속제품<br>제조업(28)         | 중앙난방 보일러 부품 및 방열기<br>설치용 금속탱크 및 저장용기<br>핵반응기 부품<br>증기발생기 부품<br>금속단조, 압형 및 분말야금제품(가정용 압형제품 및 병마<br>개를 제외한다)<br>금속 열처리, 도금 및 기타 처리제품(금속인쇄업을 제외한다)<br>튼 및 호환성공구<br>금속파스너 및 나사제품<br>금속스프링<br>금속제 아크 용접 전극, 선박의 추진기와 블레이드 및 닻,<br>금속제의 플레시블 튜브, 철강 및 금속의 기타제품                   | 28121<br>28122<br>28131<br>28132<br>2891<br>2892<br>28934<br>28941<br>28943<br>28999                 |
| 기타 기계 및<br>장비 제조업<br>(29) | 내연기관 및 터빈<br>펌프 및 압축기<br>탭, 밸브 및 유사장치<br>베어링, 기어 및 동력전달장치<br>산업용 오븐 및 노 부품   | 2911<br>2912<br>29130<br>2914<br>29150 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적용범위(부품·소재)   | 품목코드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-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산업용 트럭 및 물품취급장비 부품<br>산업용 냉장 및 냉동장비 부품<br>공기조화장치 부품(자동차용은 완제품을 포함한다)<br>산업용 송풍기 및 배기장치 부품<br>기체여과기<br>액체여과기<br>증류기, 열교환기 및 가스발생기<br>기타 일반목적용 기계 부품<br>가공공작기계 부품<br>기타 특수목적용 기계 부품(주형 및 금형은 완제품을 포함한다)<br>무기 부품<br>기타 가정용 전열기기 부품<br>기타 가정용 전기기기 부품<br>가정용 비전기식 조리 및 난방기구 부품 | 2916<br>29171<br>29172<br>29173<br>29174<br>29175<br>29176<br>2919<br>292<br>293<br>29400<br>29511<br>29519<br>29520  |
| 컴퓨터 및 사무용 기기 제조업(30)         | 컴퓨터 기억장치<br>컴퓨터 입·출력장치 및 기타 주변기기(컴퓨터 본체와 분리되는 CRT모니터, 프린터의 완제품을 제외한다)<br>복사기 부품   | 30012<br>30013<br>30021   |
| 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(31)     | 전동기, 발전기 및 전기변환장치(발전기세트를 제외한다)<br>전기공급 및 전기제어장치<br>절연 금속선 및 케이블<br>절연 광섬유케이블<br>일차전지(리튬전지에 한한다)<br>축전지<br>전구 및 램프 부품<br>일반 조명장치 부품<br>내연기관용 및 차량용 전기장치<br>전기정보 및 신호장치 부품<br>자석 및 자석제품<br>전기용 탄소제품 및 절연체<br>교통통제용 전기장치 부품<br>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기장비 부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11<br>312<br>31301<br>31302<br>31401<br>31402<br>31510<br>31521<br>3191<br>31991<br>31992<br>31993<br>31994<br>31999 |
| 전자부품, 영상, 음향 및 통신 장비 제조업(32) | 반도체 및 기타 전자제품<br>통신기기 및 방송기기 부품<br>방송수신기 및 기타 영상, 음향기기 부품(안테나와 마이크로폰을 포함한다)   | 321<br>322<br>323   |
| 의료, 정밀, 광학 기기 및 시계           | 의료용기기 부품(의료용 가구를 제외한다)<br>측정, 시험, 항해 및 기타 정밀기기(도안 및 제도기구를 제   | 331<br>332  |

| 구 분                | 적용범위(부품·소재)        | 품목코드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제조업(33)            | 외한다)               |       |
|                    | 광섬유 및 광학요소         | 33321 |
|                    | 사진기, 영사기 및 관련장비 부품 | 33322 |
|                    | 기타 광학기기 부품         | 33329 |
|                    | 시계 부품              | 33402 |
|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(34) | 자동차용 엔진            | 34110 |
|                    | 자동차 부품             | 343   |
|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(35)    | 선박 구성부분품           | 35114 |
|                    | 철도차량 부품 및 관련장치물 부품 | 35202 |
|                    | 항공기 및 우주선의 보조장치 부품 | 35310 |
|                    | 항공기용 엔진 및 부품       | 353   |
|                    | 모터사이클 부품           | 35910 |
|                    | 자전거 및 장애인용 차량 부품   | 35920 |
| 가구 및 기타 제품 제조업(36) | 운송장비용 의자           | 36111 |

\* 품목코드는 8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이며, 9차 한국표준산업분류와의 연계표는  
중소기업청 홈페이지>지원정책>중소기업건강관리 코너에 별도 공지

<비 고>

1. 부품은 부분품을 포함한다.
2. 동일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속하는 것 중에서 독립적으로 사용되는 완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품·소재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다.
3. 상품 제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로 사용됨과 동시에 완제품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도 이를 부품으로 본다.

#### 4 지역별 전략산업 및 연고산업

| 지역 | 전략산업   | 연고산업   |
|----|--|--|
| 부산 | 항만물류산업, 기계부품소재산업, 관광컨벤션산업, 영상·IT산업                   | 해양바이오산업, 실버산업, 신발산업, 수산·가공산업, 섬유·패션산업 등  |
| 대구 | 메카트로닉스산업, 전자·정보기기산업, 섬유산업, 생물산업                      | 문화콘텐츠산업, 비즈니스서비스업, 안경산업, 소프트웨어산업, 전시·컨벤션산업, 출판·인쇄산업, 시멘트, 석회,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, 의료용 기기제조업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대전 | 정보통신산업, 바이오산업, 첨단부품·소재산업, 메카트로닉스산업                   | 영상·게임산업, 웰빙산업(실버벤처산업), 대덕구공예산업, 동구포도주가공산업, 첨단섬유소재산업, 안경산업 등  |
| 광주 | 광산업, 정보가전산업, 자동차·첨단부품소재산업, 디자인·문화산업                  | 김치산업, 한복패션산업, 화훼·원예산업, 떡산업, 금형산업 등   |
| 울산 | 자동차산업, 조선해양산업, 정밀화학산업, 환경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울산농산물, 울산축산업, 산악·산업·해양관광산업 등   |
| 강원 | 바이오산업, 의료기기산업, 신소재·방재·플라즈마산업, 관광문화산업                 | 생명농어업, 건강채소·화훼산업, 토종동물산업, 목재·산림산업, 유기농업, 한방·약초산업, 기능성식품, 수산가공산업, 시멘트, 석회, 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업,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업, 신발부품관련 산업 등   |
| 충북 | 바이오산업, 반도체산업, 차세대전지, 전기전자융합부품산업                      | 바이오농업, 석회석신소재산업, 옥천묘목, 옷산업, 에코세라피건강산업, 약초산업, 태양광산업, 보은문화산업 등   |
| 충남 | 전자·정보기기산업, 자동차·자동차부품산업, 첨단문화산업, 농·축산바이오산업            | 금산인삼산업, 보령머드산업, 공주자카드섬유산업, 계룡군문화엑스포, 청양칠갑산그린투어, 서산육쪽마늘일류화사업, 예산사광가공·유통산업 등   |
| 전북 | 자동차부품 및 기계산업, 생물산업, 방사선융합기술 및 대체에너지 산업, 전통문화·영상·관광산업 | 익산귀금속·보석산업, 익산니트산업, 남원옷칠산업, 순창장류산업, 남원목기·허브산업, 진안홍삼·한방산업, 고창복분자산업, 임실유가공산업 등   |
| 전남 | 생물산업, 신소재·조선산업, 물류산업, 문화관광산업, 신재생에너지, 자동차부품·소재       | 기능성식품산업, 토종약초생산·가공업, 나비디자인·천연염색산업, 도자기(삼강청자)산업, 전통애견(진도개)산업, 양식어업, 수산물가공및저장처리업, 차류가공업, 과일,채소가공 및 저장처리업 등                 |
| 경북 | 전자·정보기기산업, 신소재·부품산업, 생물·한방산업, 문화·관광산업, 신재생에너지, 로봇산업  | 섬유기계산업, 한방산업, 인삼가공산업, 문화축제이벤트산업, 농산물가공·시설채소산업, 신재생에너지, 로봇산업 등  |
| 경남 | 지식기반기계 산업, 로봇 산업, 지능형 홈 산업, 바이오 산업                   | Silk산업, 석재가공산업, 축산사료유통산업, 농차가공산업, 약초·자연건강식품산업, 마늘가공산업, 진주가공산업, 양파산업, 치과의료산업, 고령토 산업, '지역정보포털'의 경남지역 향토자원 중 특산물을 활용한 산업 등 |
| 제주 | 관광산업, 건강·뷰티 생물산업, 친환경농업생명산업, 디지털콘텐츠산업                | 축산업, 수산업, 스포츠산업, 향토음식산업, 화훼산업 등  |



## 5 지식서비스산업

| 품목코드  | 해 당 업 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3900  | 환경정화 및 복원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46    | 도매 및 상품중개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582   |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                      |
| 5911  |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                |
| 59120 | 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|
| 59201 |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                      |
| 612   | 전기통신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620   | 컴퓨터 프로그래밍,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             |
| 631   | 자료처리, 호스팅, 포털 및 기타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업       |
| 639   | 기타 정보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01   | 자연과학 및 공학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     |
| 702   | 인문 및 사회과학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       |
| 713   | 광고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14   | 시장조사 및 여론조사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1531 | 경영컨설팅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21   | 건축기술, 엔지니어링 및 관련 기술 서비스업              |
| 729   |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32   | 전문디자인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3902 | 번역 및 통역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3903 | 사업 및 무형 재산권 중개업                       |
| 73909 | 그 외 기타 분류안된 전문,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       |
| 741   | 사업시설 유지관리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|
| 75320 | 보안시스템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5992 | 전시 및 행사 대행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75994 | 포장 및 충전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85504 | 온라인 교육 학원(기술 및 직업훈련 교육을 제공하는 경우에만 해당) |
| 8565  | 기술 및 직업 훈련 학원                         |
| 901   | 창작, 예술관련 서비스업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6] 문화콘텐츠산업

| 구 분                  | 품목코드  | 해 당 업 종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출 판                  | 58111<br>58112<br>58119<br>58121<br>58122<br>58123<br>58190   | 교과서 및 학습서적 출판업<br>만화 출판업<br>기타 서적 출판업<br>신문 발행업<br>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<br>정기 광고간행물 발행업<br>기타 인쇄물 출판업  |
| 음악·공연                | 59201<br>59202<br>90110<br>90121<br>90122<br>90123<br>90131<br>90132<br>90191<br>90192<br>90199                   | 음악 및 기타 오디오물 출판업<br>녹음시설 운영업<br>공연시설 운영업<br>연극단체<br>무용 및 음악단체<br>기타 공연단체<br>공연 예술가<br>비공연 예술가<br>공연 기획업<br>공연 및 제작관련 대리업<br>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  |
| 게 임                  | 58211<br>58219  | 온라인·모바일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<br>기타 게임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 |
| 영화·비디오<br>및<br>애니메이션 | 59111<br>59112<br>59113<br>59120<br>59130   | 일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<br>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<br>광고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<br>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<br>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   |
| 방송·광고                | 59114<br>59120<br>59130<br>60100<br>60210<br>60221<br>60222<br>60229<br>71310<br>71391<br>71392<br>71393<br>71399 | 방송 프로그램 제작업<br>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 관련 서비스업<br>영화,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배급업<br>라디오 방송업<br>지상파 방송업<br>프로그램 공급업<br>유선 방송업<br>위성 및 기타 방송업<br>광고 대행업<br>옥외 및 전시 광고업<br>광고매체 판매업<br>광고물 작성업<br>그외 기타 광고업 |
| 캐 릭 터                | 73201<br>73202<br>73203<br>73209  | 인테리어 디자인업<br>제품 디자인업<br>시각 디자인업<br>기타 전문 디자인업  |

## 7] 바이오산업

| 품목코드  | 해 당 업 종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
| C10   | 식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|
| C11   | 음료 제조업                  |
| 01110 |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       |
| 01123 | 종자 및 묘목 생산업             |
| 01140 | 기타 작물 재배업               |
| 01299 | 그외 기타 축산업               |
| 10619 | 기타 곡물가공품 제조업            |
| 21101 | 의약품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      |
| 21102 |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            |
| 21210 | 완제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  |
| 21220 | 한의원약품 제조업               |
| 21230 | 동물용 의약품 제조업             |
| 21300 | 의료용품 및 기타 의약관련 제품 제조업   |
| 13999 | 그외 기타 분류안된 섬유제품 제조업     |
| 20111 |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질 제조업        |
| 20119 | 기타 기초유기화학물질 제조업         |
| 20412 | 농약제조업                   |
| 20499 |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제조업     |
| 22222 | 저장용 및 위생용 플라스틱 제조업      |
| 22299 | 그외 기타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     |
| 27111 | 방사선 장치 제조업              |
| 27112 | 전기식 진단 및 요법기기 제조업       |
| 27192 |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    |
| 27199 |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        |
| 2929  | 기타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      |
| 33999 | 그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제품 제조업 |
| 70111 | 물리, 화학 및 생물학 연구개발업      |
| 70112 | 농학 연구개발업                |
| 70113 | 의학 및 약학 연구개발업           |
| 72911 | 물질성분 검사 및 분석업           |

\* 위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 바이오산업에 해당되는 기업(바이오산업 해당여부는 진단기관 또는 전문가의 현장 확인 후 판단)

- 바이오산업 : 생명체가 가지는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산업적으로 유용한 생산물과 서비스로 가공·생산하는 산업

## 8] 융복합 및 프랜차이즈산업

| 구 분     | 적 용 범 위   |
|---------|---|
| 융복합산업   | <p>○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산업간, 기술과 산업간, 기술간 또는 기업이 공동으로 새로운 제품이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</p> <p>① 농공상 융합기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『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』 제37조에 의하여 농공상 융합분야로 협업사업계획을 승인받은 기업</li> <li>- 농림수산식품부 선정 “농공상 융합형 중소기업”</li> </ul> <p>② 농공상 융합기업 이외의 융복합산업 : 『산업융합 촉진법』에 따라 융복합산업으로 인정되는 산업을 영위하는 기업</p>                      |
| 프랜차이즈산업 | <p>○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가맹사업법”이라 한다)상 가맹사업<sup>*</sup>을 하는 기업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정보공개서를 등록(가맹사업법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)한 업체(가맹본부)에 한함</p> <p>* 가맹사업 해당 요건 : ①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영업표지 사용을 허락, ② 가맹점사업자는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, ③ 가맹본부는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, 교육, 통제를 수행, ④ 영업표지 사용 및 경영·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·교육에 대한 대가로 가맹금 지급, ⑤ 지속적인 거래 관계(가맹사업법 제2조제1호)</p> |

## 9] 제조업 적합업종 지정 품목

| 업종명<br>(2단위)                       | 품목수       | 품 목 명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
| 식료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       | 순대, 청국장, 어묵, 고추장, 된장, 간장, 김치, 햄버거빵, 도시락, 떡, 김, 두부, 옥수수식용유, 옥수수정제유, 단무지, 국수, 냉면, 당면, 앙금류, 기타곡물가루(메밀가루) |
| 음료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         | 막걸리, 원두커피, 녹차, 홍차, 울무차, 유자차, 기타가공차  |
| 섬유제품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| 기타가공사   |
| 의복, 복색세서리<br>및 모피제품<br>제조업         | 1         | 맞춤양복  |
| 펄프, 종이 및<br>판지 제조업                 | 2         | 골판지상자, 판지상자 및 용기  |
| 인쇄 및 기록매체<br>복제업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| 기타인쇄물   |
| 화학물질 및<br>화학제품 제조업                 | 10        | 세탁비누, 부식억제제(수처리제), 자동차용 부동액, 유기계면활성제, 수소·질소·산소·이산화탄소·아세틸렌가스·아르곤가스충전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고무제품 및<br>플라스틱제품<br>제조업            | 4         | 플라스틱병, 기타플라스틱포장용기, 재생타이어, 플라스틱 봉투   |
| 비금속 광물제품<br>제조업                    | 5         | 기타 판유리 가공품, 기타 안전유리, 레미콘, 아스콘, 생석회  |
| 1차 금속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| 아연분말  |
| 금속가공제품<br>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| 13        | 주조 6개 품목, 단조 7개 품목  |
| 전자부품, 컴퓨터,<br>영상, 음향 및<br>통신장비 제조업 | 3         | DVR, 비디오 도오폰, 차량용 블랙박스  |
| 전기장비 제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| 7         | 절연전선, LED등, 송배전변압기, 기타 개폐 및 보호관련 기기, 고압배전반, 저압배전반, 아크용접기  |
| 기타 기계 및 장비<br>제조업                  | 8         | 플라스틱금형, 프레스금형, 에어핸드링유니트, 팬코일유니트, 향온향습기, 냉각탑, 냉동 냉장 쇼케이스, 주차기  |
| 자동차 및<br>트레일러 제조업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| 자동차 재제조부품   |
| <b>합 계</b>                         | <b>84</b> |   |

<별표 4>

## 기업건강 상담신청 및 접수처

지방중소기업청

| 지 역    | 담당자 연락처      | e-mail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청    | 02-2110-6308 | chaesr38@smba.go.kr   |
| 부산·울산청 | 051-601-5109 | yoobk21@smba.go.kr    |
| 대구·경북청 | 053-659-2209 | jumong@smba.go.kr     |
| 광주·전남청 | 062-360-9113 | young4611@smba.go.kr  |
| 경기청    | 031-201-6906 | willhope@smba.go.kr   |
| 인천청    | 032-450-1115 | pkbzzz@smba.go.kr     |
| 대전·충남청 | 042-865-6193 | clotholove@smba.go.kr |
| 강원청    | 033-260-1613 | cms1022@smba.go.kr    |
| 충북청    | 043-230-5325 | kyc0922@smba.go.kr    |
| 전북청    | 063-210-6414 | musell@smba.go.kr     |
| 경남청    | 055-268-2566 | jskang@smba.go.kr     |

□ 중소기업진흥공단

| 지 역   | 지점명     | 담당자 연락처      | e-mail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    | 서울지역본부  | 02-6678-4134 | hyunjong@sbc.or.kr   |
|       | 서울동남부지부 | 02-2156-2207 | yit83@sbc.or.kr      |
|       | 서울북부지부  | 02-769-6814  | sykim@sbc.or.kr      |
| 부산·울산 | 부산지역본부  | 051-630-7404 | leesj55@sbc.or.kr    |
|       | 부산동부지부  | 051-712-9677 | mendd@sbc.or.kr      |
|       | 울산지역본부  | 052-703-1123 | mhchoi@sbc.or.kr     |
| 대구·경북 | 대구지역본부  | 053-601-5298 | imyoji@sbc.or.kr     |
|       | 경북지역본부  | 054-476-9324 | jjchoi@sbc.or.kr     |
|       | 경북동부지부  | 054-223-2046 | cbjang@sbc.or.kr     |
|       | 경북남부지부  | 053-212-3332 | jys2226@sbc.or.kr    |
| 광주·전남 | 광주지역본부  | 062-600-3023 | seongmini@sbc.or.kr  |
|       | 전남지역본부  | 061-280-8041 | dyjeong@sbc.or.kr    |
|       | 전남동부지부  | 061-724-1044 | lkslim@sbc.or.kr     |
|       | 제주지역본부  | 064-751-2053 | yhyoon@sbc.or.kr     |
| 경기    | 경기지역본부  | 031-259-7913 | jh0817@sbc.or.kr     |
|       | 경기동부지부  | 031-628-6896 | jiwonkim@sbc.or.kr   |
|       | 경기서부지부  | 031-496-1085 | yse0926@sbc.or.kr    |
|       | 경기북부지부  | 031-920-6733 | naya2150@sbc.or.kr   |
| 인천    | 인천지역본부  | 032-450-0532 | johyunduk@sbc.or.kr  |
|       | 인천서부지부  | 032-450-0573 | parang@sbc.or.kr     |
| 대전·충남 | 대전지역본부  | 042-866-0142 | ksw@sbc.or.kr        |
|       | 충남지역본부  | 041-621-3683 | wgseo@sbc.or.kr      |
| 강원    | 강원지역본부  | 033-259-7635 | ugdesign@sbc.or.kr   |
|       | 강원영동지부  | 033-655-8876 | puby81@sbc.or.kr     |
| 충북    | 충북지역본부  | 043-230-6815 | risklove@sbc.or.kr   |
|       | 충북북부지부  | 043-841-3613 | kchiyong@sbc.or.kr   |
| 전북    | 전북지역본부  | 063-210-9926 | hsh@sbc.or.kr        |
|       | 전북서부지부  | 063-460-9822 | joywin@sbc.or.kr     |
| 경남    | 경남지역본부  | 055-212-1385 | lsj78@sbc.or.kr      |
|       | 경남동부지부  | 055-310-6616 | smj@sbc.or.kr        |
|       | 경남서부지부  | 055-756-3063 | leeyounwoo@sbc.or.kr |

□ 신용보증기금

| 지 역   | 지점명          | 담당자 연락처              | e-mail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    | 기업지원부        | 02-710-4657          | pioneer@kodit.co.kr  |
|       | 특화사업영업본부     | 02-710-4155          | trustjs@kodit.co.kr  |
|       | 서울서부영업본부     | 02-2077-6662         | kdjung@kodit.co.kr   |
|       | 마포지점         | 02-710-4526          | lkj75@kodit.co.kr    |
|       | 영등포지점        | 02-2165-5604         | cchum@kodit.co.kr    |
|       | 제주지점         | 064-740-9422         | yhyoo@kodit.co.kr    |
|       | 광화문지점        | 02-311-4213          | jeon1118@kodit.co.kr |
|       | 구로지점         | 02-2107-4222         | khkg@kodit.co.kr     |
|       | 남대문지점        | 02-3709-7023         | pitt7@kodit.co.kr    |
|       | 서울디지털지점      | 02-2109-4732         | ochangs@kodit.co.kr  |
|       | 강서지점         | 02-3660-1422         | sjpark@kodit.co.kr   |
|       | 김포지점         | 031-980-4923         | bcchun@kodit.co.kr   |
|       | 고양지점         | 031-909-6132         | kgb@kodit.co.kr      |
|       | 방배지점         | 02-3489-5212         | sichoo@kodit.co.kr   |
|       | 과주지점         | 031-956-3212         | flood@kodit.co.kr    |
|       | 서귀포지점        | 064-763-8063         | sjchin@kodit.co.kr   |
|       | 서울동부영업본부     | 02-2141-3303         | hikwon@kodit.co.kr   |
|       | 동대문지점        | 02-2250-5232         | hiickr@kodit.co.kr   |
|       | 광진지점         | 02-2204-6224         | smoonk@kodit.co.kr   |
|       | 강남지점         | 02-2141-3221         | hjchung@kodit.co.kr  |
|       | 강북지점         | 02-3499-7212         | hyyoo@kodit.co.kr    |
|       | 삼성지점         | 02-2194-2923         | jsyim@kodit.co.kr    |
|       | 의정부지점        | 031-828-1722         | lwcybm@kodit.co.kr   |
|       | 강동지점         | 02-2041-9212         | eun@kodit.co.kr      |
|       | 구리지점         | 031-560-6612         | hsyoo@kodit.co.kr    |
|       | 테헤란로지점       | 02-3420-4222         | lsw108@kodit.co.kr   |
|       | 하남지점         | 031-790-9613         | nkuk@kodit.co.kr     |
|       | 송파지점         | 02-2140-8513         | kmass92@kodit.co.kr  |
| 양재지점  | 02-3460-5422 | leoksy@kodit.co.kr   |                      |
| 포천지점  | 031-543-7694 | kcgf3279@kodit.co.kr |                      |
| 부산·울산 | 부산경남영업본부     | 051-605-3122         | jwansup@kodit.co.kr  |
|       | 부산지점         | 051-605-3021         | sc100@kodit.co.kr    |
|       | 사상지점         | 051-310-9622         | ink1207@kodit.co.kr  |
|       | 울산지점         | 052-226-7822         | sunghee@kodit.co.kr  |
|       | 동래지점         | 051-580-4213         | kdals@kodit.co.kr    |
|       | 사하지점         | 051-200-9622         | sjc444@kodit.co.kr   |
|       | 부산중앙지점       | 051-660-5023         | youngho@kodit.co.kr  |
|       | 녹산지점         | 051-974-6622         | higher15@kodit.co.kr |



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대구·경북 | 대구경북영업본부 | 053-430-8917  | candy427@kodit.co.kr |
|       | 대구지점     | 053-430-8822  | jchang@kodit.co.kr   |
|       | 대구서지점    | 053-560-5022  | esko@kodit.co.kr     |
|       | 포항지점     | 054-271-6412  | jhbae@kodit.co.kr    |
|       | 구미지점     | 054-450-2523  | evision@kodit.co.kr  |
|       | 대구동지점    | 053-757-5813  | parky77@hanmail.net  |
|       | 대구북지점    | 053-350-8823  | probasser@korea.com  |
|       | 성서지점     | 053-589-6513  | brave2me@kodit.co.kr |
|       | 경산지점     | 053-810-0912  | kangsj@kodit.co.kr   |
|       | 안동지점     | 054-840-8613  | khh014@kodit.co.kr   |
|       | 영주지점     | 054-639-1512  | sbkim@kodit.co.kr    |
|       | 경주지점     | 054-749-5511  | horays@kodit.co.kr   |
|       | 칠곡지점     | 054-975-3296  | lhy@kodit.co.kr      |
| 광주·전남 | 호남영업본부   | 062-607-9184  | smskcb@nate.com      |
|       | 광주지점     | 062-607-9112  | lwtak@kodit.co.kr    |
|       | 여수지점     | 061-640-2624  | steinee@kodit.co.kr  |
|       | 목포지점     | 061-280-9122  | ijmoon@kodit.co.kr   |
|       | 광주남지점    | 062-600-1522  | kojh@kodit.co.kr     |
|       | 순천지점     | 061-729-1312  | sokim@kodit.co.kr    |
|       | 광산지점     | 02-710-4589   | ahnjjang@kodit.co.kr |
|       | 광주북지점    | 062-520-2022  | yhcho@kodit.co.kr    |
| 경기    | 경기영업본부   | 031-230-1563  | kitty@kodit.co.kr    |
|       | 수원지점     | 031-230-1522  | jqkim@kodit.co.kr    |
|       | 안양지점     | 031-389-9712  | bigtiger@kodit.co.kr |
|       | 성남지점     | 031-725-5552  | pwwoo@kodit.co.kr    |
|       | 평택지점     | 031-650-0822  | jhk0517@kodit.co.kr  |
|       | 이천지점     | 031-630-0112  | eport@kodit.co.kr    |
|       | 용인지점     | 031-288-1822  | johjy@kodit.co.kr    |
|       | 군포지점     | 031-450-6413  | ewjung@kodit.co.kr   |
|       | 화성지점     | 031-350-9323  | gogetter@kodit.co.kr |
|       | 경안지점     | 031-799-0213  | thebest1@kodit.co.kr |
|       | 화성서지점    | 031-8059-8514 | mhbae@kodit.co.kr    |
|       | 오산지점     | 031-371-6114  | jjhyun@kodit.co.kr   |
| 인천    | 인천영업본부   | 032-450-1673  | wjh@kodit.co.kr      |
|       | 인천지점     | 032-880-3022  | skp@kodit.co.kr      |
|       | 반월지점     | 031-490-0422  | sunkist@kodit.co.kr  |
|       | 인천중앙지점   | 032-450-1623  | kkn@kodit.co.kr      |
|       | 부평지점     | 032-500-2722  | kwhan@kodit.co.kr    |
|       | 안산지점     | 031-412-0523  | hongrok@kodit.co.kr  |
|       | 남동지점     | 032-810-5223  | bang@kodit.co.kr     |
|       | 부천중앙지점   | 032-650-6523  | sch4153@yahoo.co.kr  |
|       | 시화지점     | 031-488-3213  | chunja75@kodit.co.kr |
|       | 인천서지점    | 032-580-1422  | knhtr@kodit.co.kr    |
|       | 시흥지점     | 031-489-5913  | baedol2@kodit.co.kr  |

|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
| 대전·충남 | 충청영업본부   | 042-539-5606 | sunyoung@kodit.co.kr |
|       | 대전지점     | 042-250-2023 | dkkim77@kodit.co.kr  |
|       | 천안지점     | 041-550-8022 | hicha@kodit.co.kr    |
|       | 서산지점     | 041-661-5222 | oasis001@kodit.co.kr |
|       | 대전중앙지점   | 042-539-5643 | sunjj7@kodit.co.kr   |
|       | 대덕지점     | 042-620-5312 | victoryi@kodit.co.kr |
|       | 아산지점     | 041-537-7213 | starwars@kodit.co.kr |
|       | 보령지점     | 041-936-9161 | captkidd@kodit.co.kr |
| 강원    | 서울동부영업본부 | 02-2141-3303 | hikwon@kodit.co.kr   |
|       | 춘천지점     | 033-250-2512 | jyleem@kodit.co.kr   |
|       | 강릉지점     | 033-650-8023 | tongsok@kodit.co.kr  |
|       | 원주지점     | 033-749-1312 | hdj@kodit.co.kr      |
|       | 속초지점     | 033-638-0163 | jsj@kodit.co.kr      |
|       | 동해지점     | 033-531-9093 | halul@kodit.co.kr    |
| 충북    | 충청영업본부   | 042-539-5606 | sunyoung@kodit.co.kr |
|       | 청주지점     | 043-261-9332 | kennykim@kodit.co.kr |
|       | 충주지점     | 043-840-1522 | tkjeong@kodit.co.kr  |
|       | 증평지점     | 043-820-2505 | hckwon@kodit.co.kr   |
|       | 제천지점     | 043-645-9135 | okman@kodit.co.kr    |
| 전북    | 호남영업본부   | 062-607-9184 | smskcb@nate.com      |
|       | 전주지점     | 063-230-2522 | wmrhee@kodit.co.kr   |
|       | 군산지점     | 063-460-1522 | hexis93@kodit.co.kr  |
|       | 익산지점     | 063-830-3322 | ononon@kodit.co.kr   |
|       | 정읍지점     | 063-531-1615 | kimjm@kodit.co.kr    |
| 경남    | 부산경남영업본부 | 051-605-3122 | jwansup@kodit.co.kr  |
|       | 창원지점     | 055-269-0212 | dreamkh@kodit.co.kr  |
|       | 진주지점     | 055-760-7623 | saaaw@kodit.co.kr    |
|       | 마산지점     | 055-240-5923 | nana389@kodit.co.kr  |
|       | 김해지점     | 055-320-2723 | jjs1977@kodit.co.kr  |
|       | 통영지점     | 055-640-6512 | ssbyun@kodit.co.kr   |
|       | 양산지점     | 055-371-3113 | mschang@kodit.co.kr  |

□ 기술보증기금

| 지 역  | 지점명   | 담당자 연락처           | e-mail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서울   | 서울본부  | 02-3215-5910      | yuhh@kibo.or.kr    |
|      | 종로기평  | 02-738-7801(810)  | rwtksk1@kibo.or.kr |
|      | 구로기평  | 02-6124-6404      | meyihs@kibo.or.kr  |
|      | 가산기평  | 02-818-4310       | 765@kibo.or.kr     |
|      | 의정부기평 | 031-820-0340      | 393@kibo.or.kr     |
|      | 강남본부  | 02-2016-1350      | jhkim@kibo.or.kr   |
|      | 서초기평  | 02-3476-7265(110) | 864@kibo.or.kr     |
|      | 송파기평  | 02-3400-7910      | ksson@kibo.or.kr   |
|      | 성남본부  | 031-750-4810      | mchung@kibo.or.kr  |
| 부산울산 | 부산본부  | 051-606-7681      | wonmoon@kibo.or.kr |
|      | 동래기평  | 051-517-6070(201) | jyd@kibo.or.kr     |
|      | 사상기평  | 051-320-3420      | kjc1410@kibo.or.kr |
|      | 사하기평  | 051-250-7802      | 549@kibo.or.kr     |
|      | 울산기평  | 052-268-8721(301) | kyd@kibo.or.kr     |
|      | 녹산기평  | 051-832-0460(101) | 354@kibo.or.kr     |
| 대구경북 | 대구본부  | 053-251-5631      | jinseo@kibo.or.kr  |
|      | 대구서기평 | 053-652-1861(101) | 1534@kibo.or.kr    |
|      | 대구북기평 | 053-356-0421(101) | e00636@kibo.or.kr  |
|      | 구미기평  | 054-455-7881(101) | 332@kibo.or.kr     |
|      | 포항기평  | 054-275-3961(201) | 716@kibo.or.kr     |
| 광주전남 | 광주본부  | 062-360-4610      | parkume@kibo.or.kr |
|      | 제주출장소 | 064-727-0271(100) | 705@kibo.or.kr     |
|      | 광주서기평 | 062-941-6833(101) | 341@kibo.or.kr     |
|      | 목포기평  | 061-284-0394(101) | 873@kibo.or.kr     |
|      | 순천기평  | 061-729-9333(337) | 842@kibo.or.kr     |

|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경기   | 수원본부   | 031-8006-1560 (560) | 1444@kibo.or.kr     |
|      | 안양기평   | 031-459-2071(601)   | dckwon@kibo.or.kr   |
|      | 안산기평   | 031-401-0260(401)   | ddol@kibo.or.kr     |
|      | 시화기평   | 031-496-5920        | 542@kibo.or.kr      |
|      | 평택기평   | 031-656-7221(101)   | bool@kibo.or.kr     |
|      | 화성기평   | 031-366-4411(101)   | 942@kibo.or.kr      |
| 인천   | 인천본부   | 032-830-5610        | lovepark@kibo.or.kr |
|      | 인천중앙기평 | 032-420-3510        | 373@kibo.or.kr      |
|      | 부평기평   | 032-623-6140(101)   | james206@kibo.or.kr |
|      | 부천기평   | 032-327-1451(210)   | 1531@kibo.or.kr     |
|      | 일산기평   | 031-931-7210        | lsdcjm@kibo.or.kr   |
|      | 김포기평   | 031-986-2053(101)   | parkjgu@kibo.or.kr  |
| 대전충남 | 대전본부   | 042-483-7451(630)   | jskim@kibo.or.kr    |
|      | 대전동기평  | 042-254-6457(101)   | cumaeng@kibo.or.kr  |
|      | 천안기평   | 041-629-5930        | 706@kibo.or.kr      |
|      | 아산기평   | 041-538-5921        | 1118@kibo.or.kr     |
| 강원   | 춘천기평   | 033-241-7161(201)   | jee@kibo.or.kr      |
|      | 원주기평   | 033-730-8320        | ykle5@kibo.or.kr    |
|      | 강릉기평   | 033-642-1021(101)   | ilho@kibo.or.kr     |
| 충북   | 청주기평   | 043-290-9540        | 783@kibo.or.kr      |
|      | 충주기평   | 043-842-1591(101)   | 302@kibo.or.kr      |
| 전북   | 전주기평   | 063-270-9810        | 519@kibo.or.kr      |
|      | 익산기평   | 063-443-2151(200)   | dookang@kibo.or.kr  |
| 경남   | 창원본부   | 055-210-4010        | 1594@kibo.or.kr     |
|      | 진주기평   | 055-750-1110        | 317@kibo.or.kr      |
|      | 김해기평   | 055-330-2111        | 876@kibo.or.kr      |
|      | 양산기평   | 055-387-6571(201)   | 795@kibo.or.kr      |



[붙임 1]

**[기업명] 기업현황 및 기술경영 애로사항**

**□ 회사연혁**

| 년 월 | 주 요 내 용<br>(설립, 상호/대표자변경, 법인전환, 자본증자, 사업장/공장이전 등 주요사항 기재) |
|-----|---|
|     |   |
|     |   |
|     |   |
|     |   |

**□ 매출 및 직원 현황**

| 구 분 |        | 최근 3개년 실적 및 향후계획 (단위: 백만원, 명)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|      |      |
|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|---------|----|------|------|
|     |        | 20 년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년 | 20 년 | 20 년    |    | 20 년 | 20 년 |
|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( )월 현재 | 년간 |      |      |
| 매출  | 총매출액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|      |      |
|     | 수출액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|      |      |
| 직원  | 총인원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|      |      |
|     | 기술/생산직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|         |    |      |      |

**□ 주요 생산제품(상품 및 서비스) 개요**

|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품용도 및 특성<br>(상품 및 서비스 주요내용)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품생산공정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* 주제품에 대해 기재하며, 비제조업의 경우 서비스 흐름도를 작성 |
| 시 장 상 황<br>(시장규모, 주요 수요처, 경쟁업체 현황 등)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술품질경쟁력<br>(국내외 경쟁사 제품과 기술, 품질, 가격 비교)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요전망<br>및 판매계획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\* 항목별 별지 사용 가능

□ 기술경영 애로사항

| 분야  | 주요 애로사항   |  |  |
|---|---|--|--|
| 자금  | 자금 필요사유   |  |  |
|   | 구 분   | 세부 신청내용 (해당란에 √ 표시)  |  |
|   | 업 력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업력 5년 미만 <input type="checkbox"/> 업력 5년 이상<br>*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과거 개인기업 업력 포함하여 산정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| 융자신청금액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시설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백만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운전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백만원                |  |
|   | 자금필요시기  | <input type="checkbox"/> 1개월이내 <input type="checkbox"/> 3개월이내 <input type="checkbox"/> 6개월이내 <input type="checkbox"/> 1년이내 |  |
|   | 시설자금<br>소요내역  | * 시설명, 금액 등 기재<br>(시설자금 관련 도면, 견적서(세부내역서 등) 첨부)  |  |
|   | 운전자금<br>소요내역  |  |  |
|   | 담보종류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 <input type="checkbox"/> 보증서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동산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         |  |
|   |   | * 보증기관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기금(재단)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지점 [ <input type="checkbox"/>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           |  |
| 융자기관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진흥공단 직접대출  |  |  |
|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은행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지점 담당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 <input type="checkbox"/>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 |  |  |
| 보증  | 보증 필요사유   |  |  |
|   | 구 분   | 세부 신청내용 (해당란에 √ 표시)  |  |
|   | 보증기관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신용보증기금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술보증기금 <input type="checkbox"/> 지역신용보증재단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   | 보증필요금액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시설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백만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운전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백만원                |  |
|   | 보증필요시기  | <input type="checkbox"/> 1개월이내 <input type="checkbox"/> 3개월이내 <input type="checkbox"/> 6개월이내 <input type="checkbox"/> 1년이내 |  |
|   | 시설자금보증<br>소요내역  | * 시설명, 금액 등 기재   |  |
|   | 운전자금보증<br>소요내역  |  |  |
|   | 대출기관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진흥공단(직접대출)  |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은행 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지점 담당자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[ <input type="checkbox"/>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] |   |  |  |
| R&D/<br>정보화   |   |  |  |
| 국내외<br>마케팅  |   |  |  |

|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|--|
| 기술/<br>경영지원  |  |
| 인력/<br>연수    |  |
| 사업전환<br>/M&A |  |
| 기 타          |  |





|                  |   |  |  |
|------------------|---|--|--|
| ⑥진단거절기업          | 진단기관에서 신청·접수가 반려된 기업으로 6개월이 경과한 기업 해당여부(단, 6개월 이전에 반려사유가 해소된 경우는 예외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  |
| ⑦휴·폐업 기업         | 휴·폐업중인 기업 해당여부  |  |  |
| ⑧세금 체납           | 세금(국세 또는 지방세)을 체납중인 기업 해당여부   |  |  |
| ⑨신용거래 불량기업 등록 업체 | 전국은행연합회의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라 연체, 대위변제·대지급, 부도, 관련인, 금융질서문란, 화외·법정관리·기업회생신청·청산절차 등의 정보가 등록되어 있는 기업 해당여부 |  |  |
| ⑩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| 임직원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해당여부  |  |  |
| ⑪매출액             |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2년 연속 매출액 50% 이상 감소 기업 해당여부  |  |  |
| ⑫자기자본            |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기업 중 자기자본 전액 잠식 기업 해당여부  |  |  |
| ⑬연체일수            |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45일 이상 기업 해당여부  |  |  |
| ⑭연체횟수            | 창업 후 5년 이상인 기업 중 최근 3개월 이내 연체일수 10일 이상이 4회 이상인 기업 해당여부  |  |  |

※ 패스트트랙 적용기업, 구조조정 중소기업인 경우에 해당되는 부문에 체크(√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| 항 목            | 내 용  | 예 | 아니오 |
|----------------|--|---|-----|
| ①구조조정 대상 기업 여부 | 은행권의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, B, C, D등급에 해당됩니까?<br>※ 확인방법 : 주채권은행의 추천 공문 또는 전화로 확인<br>※ 기업신용위험 평가결과(     등급) |   |     |
| ②채권금융기관 의결 여부  | 채권금융기관 자율협의회에서 귀 사에 대해 ‘중소기업건강 진단신청 의결’ 하였습니까?   |   |     |

※상기 작성한 자가진단표와 진단신청기관의 조회사실이 다를 경우, 신청·접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.

20 . . . . .

기업명 :  
대표자 : (서 명)

**기업(신용)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 및 활용 동의서**

진단기관(중소기업청,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 귀중

□ 본인은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 및 제반서류에 기재된 기업(신용)정보 및 관련된 기업(신용) 정보(대출, 보증, 담보제공,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, 정책자금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정보 포함)를 수집, 이용, 조회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, 신용정보업자, 신용정보 제공이용자, 중소기업 건강관리 관계기관(진단전문가, 진단기관·공동진단기관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·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),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등에게 제공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중소기업 건강진단,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하도록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합니다.

□ 기업신용정보의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에 관한사항

-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목적 :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신용도 등의 판단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하거나 중소기업 건강관리 관련 자료로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, , 중기청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 정보로 활용, 당사의 정보(업체명, 대표자명, 지원결정일, 치유 또는 지원사업명, 지원금액 등)를 중소기업건강관리시스템 홈페이지(<http://www.bizdoctor.go.kr>), 중진공 홈페이지(<http://www.sbc.or.kr>) 및 중소기업청 홈페이지(<http://www.smba.go.kr>)에 공개
-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정보 : 기업현황,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, 영업상황(매출현황, 최근영업상황), 재무상황, 분야별 사업계획서, 기업(신용)정보 및 관련된 기업(신용)정보(대출, 보증, 담보제공, 당좌거래 등 금융정보, 정책자금 신청 이전 및 이후 기업신용정보 포함), 시설자금 전자거래시스템을 통한 전자거래내역, 세금계산서 발급,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(단, 활용정보는 매출액, 개업일, 휴업기간, 폐업일 / 수출액에 한함) 등
- 제공받는 자 : 신용정보집중기관(전국은행연합회, 여신금융협회 등), 신용정보업자(한국기업데이터(주), NICE신용평가정보(주),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 등), 신용정보 제공·이용자, 중소기업 건강관리 관계기관(진단전문가, 진단기관·공동진단기관·맞춤형 치유 지원기관 및 중소기업건강관리위원회)
- 제공·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: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(중기청 통합관리시스템 수혜기업 정보는 사업 참여 이전 3개월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수집)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. 다만,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건강관리 관계기관,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.
-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: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|          |  |
|----------|--|
| 수집·이용 동의 |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기업(신용)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br>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) |
| 제공·조회 동의 |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기업(신용)정보를 제공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br>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) |

□ 위 기관에 중소기업 건강진단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및 제반서류가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여 건강관리 맞춤형 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건강관리 맞춤형 사업 추천 취소, 신규참여제한 등의 제재 또는 법적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는 것에 동의합니다.

20   년   월   일

기업체명 :  
법인(주민)등록번호 :  
대 표 자 : (인)

- \* 본인은 기업신용정보 제공·활용 및 이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, 본 동의서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 하고 동의 하였습니다.
- \* 신용정보업자를 통한 귀사(귀하)의 신용조회사실이 귀사(귀하)의 신용등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.

# 개인(신용)정보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 동의서

진단기관(중소기업청, 중소기업진흥공단, 신용보증기금, 기술보증기금) 귀중

□ 중소기업 건강진단,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하여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제1항제1호, 제17조제1항제1호, 제23조제1호, 제24조제1항제1호 및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1항, 제2항, 제33조, 제34조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 이에 본인은 아래의 내용과 같이 귀 기관이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·이용 또는 제공하는 것과 개인(신용)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(신용) 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## 1. 수집·이용에 관한 사항

- 수집·이용 목적 : 중소기업 건강진단,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관련 상담, 심사, 평가, 지원 결정, 거래 관계의 설정·유지·이행·관리, 채권관리, 고객만족도 조사,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등
- 수집·이용할 항목
  - ▶ 필수적 정보 : 개인식별정보(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, 주소, 전자우편주소, 전화번호 등), 금융거래 정보(상품종류, 거래조건, 거래일시, 금액 등 거래 설정 및 내역 정보), 신용평가를 위한 정보(재산, 채무, 소득의 총액, 납세실적 등 신용능력정보/연체, 대위변제, 대지급, 부도 등의 신용도 판단 정보), 개인식별정보 외에 기업개요표 등에 기재된 정보,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·유지·이행·관리를 위한 상담,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
  - ▶ 선택적 정보 : 개인식별정보 외에 고객이 제공한 정보 : 학력, 수상경력 등
- 보유·이용기간 : 위 개인(신용)정보는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일로부터 금융거래 종료일까지 위 이용 목적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 단, 거래 종료일 후에는 금융사고 조사, 분쟁해결, 민원처리, 법령상 의무이행 및 귀 기관의 리스크 관리 업무만을 위하여 보유·이용됩니다.
-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: 위 개인(신용)정보 중 필수적 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필수적이므로, 위 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진단기관, 공동진단기관 및 맞춤형 치유 지원기관과의 거래 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가능합니다. 위 개인(신용)정보 중 선택적 정보의 수집·이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,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금융거래 조건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 2. 제공·조회에 관한 사항

- 제공·조회대상 기관 :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는 다음과 같은 기관에 제공·조회됩니다.
  - ▶ 신용조회회사 : 한국기업데이터(주), NICE신용평가정보(주), 코리아크레딧뷰로(주) 등
  - ▶ 신용정보집중기관 : 전국은행연합회, 여신금융협회 등
- 제공·조회 목적 : 중소기업 건강진단,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관련하여 신용조회회사,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기타 기관에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를 조회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제공됩니다.
- 제공·조회할 개인(신용)정보
  - ▶ 신용조회회사,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조회하고자 하는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- 개인식별정보 :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, 주소, 전자우편 주소, 전화번호 등
    - 신용거래정보 : 대출(현금서비스 포함), 채무보증, 신용카드(체크카드 포함), 당좌(가계 당좌) 예금 등
    - 신용등급,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
  - ▶ 위 정보를 조회하기 위하여 조회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개인(신용)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.
    - 개인(신용)정보 : 성명,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, 주소, 전화번호 등 연락처
- 제공·조회 동의의 효력 기간 :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신청한 계약의 실행 시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. 다만,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건강관리 관계기관,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.
-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: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중소기업 건강진단 공동진단 및 맞춤형 치유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불가능합니다.

|           |  |
|-----------|--|
| 수집·이용 동의  |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br>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)   |
| 제공·조회 동의  | 본인은 위 목적으로 본인의 개인(신용)정보를 제공 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br>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)   |
| 고유식별 정보동의 |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·조회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br>*고유식별정보: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, 외국인등록번호 (동의함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하지 않음 <input type="checkbox"/> ) |

20   년   월   일

주민등록번호 :

동의자 성명 :

(인)

※ 「금융감독원-전국은행연합회 개인신용정보 조회동의서 표준(안)」에 따라, 실명확인증표(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여권 등)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.

※ 위 기관이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, 등 기록은 타 금융회사에 제공될 수 있으며,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.

## 중소기업 건강진단 신청서류 작성요령

### 1. 건강진단 신청서

|          |   |
|----------|---|
| ◦ 기 업 명  | 상호 전부를 기재(예 : (주)○○○, △△(주), (유)○○○, □□기업)  |
| ◦ 설립일자   | 법인기업 :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회사성립연월일<br>개인기업 :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 기재(개인기업의 법인전환시 개인<br>사업자등록증 상 개업년월일)  |
| ◦ 소 재 지  | 법인기업은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상 본점소재지,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<br>사업장소재지 기재  |
| ◦ 매 출 액  | 최근결산년도를 기준으로 기재   |
| ◦ 종업원수   |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(일용직 제외)으로 기재   |
| ◦ 기업애로분야 | * 기업 애로분야 체크할 경우에는 붙임 1의 서식(기업현황 및 기술·경영 애로사항)의<br>기술·경영애로사항의 분야 및 주요 애로사항을 필히 작성하여야 함<br>* R&D/정보화를 체크한 경우중 기술개발자금(R&D 자금)이 필요한 경우에는<br>별지 제11호 서식(건강진단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)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 |
| ◦ 음영색란   | 신청인이 기재하지 않음<br>진단기관에서 접수번호, 접수일자, 처리기간, 표준산업분류번호, 기 진단여부,<br>투입일수, 진단관리 번호, 담당부서, 담당자를 작성함   |
| ◦ 신 청 인  | 대표이사 자서 또는 명판 날인 후 법인(개인)인감 날인  |

### 2. 기업현황 및 기술·경영 애로사항

|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◦ 입력란이 모자랄 경우 별지 작성 첨부 |   |
| ◦ 연 력                  | 설립, 대표자상호업종 변경, 자본증자, 공장신축, 이전 등 기업의 주요사항을<br>기재  |
| ◦ 매출 및<br>직원현황         | · 최근 3개년 수출실적과 총매출액을 구분하여 기재하고, 향후 3개년 실적<br>전망을 기재하며, 신청서 작성 전월말일현재 기준으로 작성(다만, 매출실<br>적은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함)<br>·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(일용직 제외)으로 기재      |
| ◦ 자 금                  | 정책자금 필요사유*와 융자신청금액(시설 또는 운전자금), 자금필요시기, 시설<br>자금 또는 운전자금 소요내역, 담보종류, 융자기관을 기재<br>* 정책자금(신규융자, 융자금 상환유예)이 필요한 사유를 '6하 원칙'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        |
| ◦ 보 증                  | 신용보증(기술보증 또는 지역신용보증) 필요 사유*와 보증기관, 보증필요금액<br>(시설 또는 운전자금 보증), 보증필요시기, 보증소요내역, 대출기관을 기재<br>* 보증(신규보증 또는 보증만기 연장)이 필요한 사유를 '6하 원칙'에 따라 구체적으로 기재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
| <p>◦ R&amp;D·정보화</p>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R&amp;D : 창업기술개발사업, 산학연협력 기술개발사업(첫걸음, 도약), 제품·공정 개선사업의 자격요건을 확인하여, 신청하는 기술개발사업 1개를 기재하고, 별지 제11호 서식 「건강진단 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」를 작성하여 진단기관에 제출</li> <li>- 생산 공정의 정보화시스템 도입(뿌리산업에 한함)이 필요한 경우에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내용 및 효과를 상세히 기재</li> </ul>   |
| <p>◦ 국내외 마케팅</p>         | <p>국내외 거래선(판매처, 바이어) 발굴애로, 국내외 시장정보 부족, 국내외 상품 홍보 애로, 해외규격 인증획득 애로 등 국내외 마케팅 역량 부족으로 시장개척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에 기업의 현재 마케팅 준비상황, 마케팅 추진계획 및 마케팅 관련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국내마케팅 : 방송, 신문 등 언론매체 홍보, 공동 A/S 지원, 휴게소 중기제품 전용 Shop, 등 국내유통망 연결, 국내 마케팅 교육 등 지원</li> <li>* 해외마케팅 : 해외규격인증획득(CE, NTRL 등), 외국어 포장디자인, 해외시장심층조사, 전자무역 서비스, 해외전시회 참가, 다국어 상품페이지 제작, 외국어 홈페이지 제작, 검색엔진 마케팅, 글로벌 브랜드 개발, 수출인큐베이터 입주 등을 연계 지원</li> </ul> |
| <p>◦ 기술·경영애로</p>         | <p>공정혁신 애로, 기업현장 경영애로 등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법무(법률자문, 상사분쟁, 인수합병, 국제분쟁), 인사/노무(고용/산재보험, 근로계약, 노무관리), 세무/회계(세무회계관리, 재무 분석, 조세법령 검토, 회계감사 자문), 기술/특허(기술동향, 기술자문, 기술보호, 지식재산권 관리, 해외출연 안내), 정보화(정보화전략 자문, 정보화기반 구축), 마케팅(마케팅전략, 시장조사, 수출정보, 관세, FTA 안내), 기술개발 애로해소 등 지원</li> <li>*생산성 향상, 품질개선, 공정개선, 원가절감, 인사/노무/조직운영, 재무, 마케팅전략, 글로벌화 전략 등 전문컨설팅 지원</li> </ul>   |
| <p>◦ 인력·연수</p>           | <p>인력 부족, 기술(경영)전문 인력양성 애로 등 기업이 겪고 있는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 부족부문(생산직, 사무직, 기술직, 기술개발인력(석박사, 학사전문학사)을 기재하고, 부족부 문별 모집인원 및 월 급여조건을 기재할 것</li> <li>* 고급기술연구인력 활용, 초중급 기술개발인력지원, 테크노닥터사업(퇴직과학기술자 취업), 청년취업인턴제, 산업기능요원제 등을 연계 지원</li> </ul>   |
| <p>◦ 사업 전환 및 M&amp;A</p> | <p>사업전환* 또는 M&amp;A를 위한 자금,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사업전환 또는 M&amp;A 추진 계획을 상세히 기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*경쟁력 저하 업종의 사업을 축소(폐지)하고, 새로운 업종의 사업에 진출하는 것</li> </ul>  |
| <p>◦ 기 타</p>             | <p>정부·지자체·공공기관의 행정규제, 대기업의 불공정 또는 사업관련 인허가, 공장설립증축이전 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에 애로내용을 상세히 기재</p>   |

### 3. 사전동의서

◦ 대표자 자서 또는 명판 날인 후 법인(개인)인감 날인

## 건강진단연계형 기술개발사업 신청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
| <b>과제명</b>               |  |
| <b>과제책임자</b>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성명 : <input type="checkbox"/> 전화 : <input type="checkbox"/> 휴대전화 : <input type="checkbox"/> e-Mail :  |
| <b>건강진단<br/>관리번호</b>     | ※ 건강진단 생략 기업(최근 1년 이내 건강진단 실시기업)에 한해 기재<br>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진단관리번호 : <input type="checkbox"/> 진단일자 : <input type="checkbox"/> 진단기관 :   |
| <b>신청사업</b>              | ※ 신청기업의 애로기술 분야에 적합한 R&D 사업에 표시(√), 1개 사업만 선택<br>※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선택시 (제품개선, 공정개선) 여부 선택(중복선택 가능)<br>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창업 기술개발 <input type="checkbox"/> 산학연협력 기술개발 <input type="checkbox"/> 제품공정개선 / (제품개선, 공정개선)   |
| <b>기업유형</b>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법인기업( <input type="checkbox"/> 개인→법인전환 <input type="checkbox"/> 일반 <input type="checkbox"/> 외감) <input type="checkbox"/> 공장등록   |
| <b>기업형태</b>              | ※ 해당하는 형태에 모두 표시(√)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인증에 한함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벤처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INNO-BIZ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MAIN-BIZ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녹색인증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뿌리기술전문기업<br><input type="checkbox"/> GREEN-BIZ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IMS인증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싱글PPM인증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전환계획 승인기업<br><input type="checkbox"/> 협업사업계획 승인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수탁위탁거래 우수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산학협약체결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장애인 기업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여성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IMS인증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모범납세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사회적기업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<br>(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선택시 택1) <input type="checkbox"/> 소상공인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소기업 |
| <b>조직현황</b>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부설연구소 보유(등록일 :    년    월    일, 소재지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전담부서 보유(등록일 :    년    월    일, 소재지 :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자체 R&D 전담조직 보유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  |
| <b>인력현황</b>              | <input type="checkbox"/> 상시근로자수 (    )명 <input type="checkbox"/> R&D 전담인력 (    )명  |
| <b>주요 참여<br/>제한여부 확인</b> | ※ 해당하는 부분에 모두 표시(√)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국가 R&D 사업 참여제한 중인 기업, 대표자 및 과제책임자 등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공정거래법에 따른 불공정행위 위반자<br><input type="checkbox"/> 기업의 부도, 휴폐업 <input type="checkbox"/> 채무불이행 <input type="checkbox"/> 부채비율 1,000%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자본전액잠식   |
| <b>지식재산권</b>             | ※ 본 과제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<br><br><input type="checkbox"/> 특허등록(    )건 <input type="checkbox"/> 특허출원(    )건 <input type="checkbox"/> 실용신안(    )건 <input type="checkbox"/> 의장 (    )건 <input type="checkbox"/> 상표(    )건<br><input type="checkbox"/> 프로그램(    )건 <input type="checkbox"/> GS (    )건 <input type="checkbox"/> 인증(    )건 <input type="checkbox"/> NET (    )건 <input type="checkbox"/> NEP(    )건<br>*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지식재산권에 한함, 법인은 출원인이 법인명, 개인은 출원인이 대표인 경우만 기재  |
| <b>수상실적</b>              | ※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간 실적기재<br><br>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기술혁신상 <input type="checkbox"/> 중소기업대상 <input type="checkbox"/> 10대 신기술상 <input type="checkbox"/> IR52장영실상 <input type="checkbox"/> 다산기술상<br><input type="checkbox"/> 벤처기업상 <input type="checkbox"/> 특허기술상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동등이상 수상(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)   |

[붙임]

## 기술개발 사업계획서

### 1. 기술개발 필요성 및 현황

- ※ 기술개발의 현황 및 필요성 중심으로 서술
- ※ 관련기술의 국내·외 기술개발현황 및 향후 전망 등을 서술

。

<표 1> 국내외 주요시장 경쟁사

| 경쟁사명 | 제품명 | 판매가격(천원) | 연 판매액(천원) |
|-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-|
| ①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| ②    |     |          |           |

※ 본 기술/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·외 기관·기업의 제품 등을 기입

### 2. 기술개발 준비현황

- ※ 신청과제에 대해 그간 준비한 기술개발 관련 내용과 지식재산권 확보방안을 포함하여 서술

。

<표 2> 국내외 관련지식재산권 현황

| 지식재산권명            | 지식재산권출원인 | 출원국/출원번호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① 예) 디자인용 프로그램 개발 | (주)우리회사  | 한국/102009XXXX |
| ②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|

※ 본 기술/제품과 직접적 경쟁관계에 있는 국내·외 기관·기업의 지식재산권 관련내용을 기입

### 3. 기술개발 최종목표

- ※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내용을 최종산물(제품, 기술 등)로 함축하여 간략히 표현

。



<표 3> 목표달성도 평가지표

| 주요 성능지표 <sup>1)</sup>   | 단 위 | 최종 개발목표 <sup>2)</sup> | 세계 최고수준 (보유국/보유기업) | 가중치 <sup>3)</sup> (%) | 객관적 측정방법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시료 수 <sup>4)</sup> (n≥b개) | 시험규격 <sup>5)</sup> |
| 1. 예) 속도  | km  | 55km 이상               | 60km(3M, 미국)       | 20   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2. 예) 소음  | db  | 10db 이하               | 8db(노키아, 핀란드)      | 15                    | 10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3.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4.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시료수 5개 미만 (n<b개)시 사유<br>○ 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| <input type="checkbox"/> 측정결과의 중빙방법<br>○ (예시) 성능지표 1의 경우 해당 공인 시험인증기관(예: OOO연구원)의 시험성적서로 중빙<br>성능지표 2의 경우 자체평가 수행 <sup>6)</sup> |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

- 주1) 주요 성능지표는 정밀도, 최수율, 열효율, 인장강도, 내충격성, 작동전압, 응답시간 등 기술적 성능판단 기준이 되는 것을 의미하며, 분야별 개발내용에 적절하게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수치화하여 반드시 제시
- 주2) 최종 개발목표는 '특정목표값 이상(min)' 또는 '특정목표값 이하(max)'의 형태로 표현
- 주3) 가중치는 각 주요 성능지표의 최종목표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말함
- 주4) 시료 수는 시험평가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최소 5개 이상이어야 하며, 5개 미만 시 사유를 명기
- 주5) 시험규격은 가능하면 공인규격상의 시험검사방법을 기재(예 : KS..., JIS...)하고, 공인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객관적인 평가방법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
- 주6) 자체평가 수행은 주요 성능지표에 대해서 외부 공인 시험·인증기관을 원칙으로 기재하되, 과제 특성상 주관기관·참여기업·위탁기관 등이 시험(성능평가)을 수행하는 경우 객관적 사유기재

4. 기술개발 내용

※ 개발하고자 하는 주요 핵심기술 위주로 기존 제품(기술)과의 차별성 등 세부적인 개발내용 서술  
 ○

<표 4> 수행기관별 업무분장(해당시)

| 수행기관   | 주요 담당 업무 | 기술개발 비중(%) |
|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|
| 주관기관   |          |            |
| 참여기업   |          |            |
| 위탁기관   |          |            |
| 외주용역처리 |          |            |
| 총 계    |          | 100%       |

※ 기술개발 비중이란 전체 기술개발내용을 100%로 하였을 경우에 각 수행기관에서 담당한 업무의 비중을 의미함

5. 연구인력 주요 이력

| 성 명<br>(구분) | 경력사항 |       |         | 전 공<br>(학위) | 최종학력 |
|-------------|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|
|             | 연 도  | 기 관 명 | 근무부서/직위 |             |      |
| (과제책임자)     | ~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~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|
| (핵심개발자)     | ~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|
|             | ~    |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|      |

※ 구분란에 과제책임자, 핵심개발자(2인 이내) 기입,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참여기업 연구책임자도 추가하여 작성

6. 국가연구개발과제 참여실적(신청중 포함)

| 번호 | 프로그램명<br>(시행부처/기관) | 과제명 | 개발기간<br>(시작-종료일) | 정부<br>출연금(천원) | 참여형태<br>(주관/참여/<br>위탁 등) | 과제현황* |     |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|-----|
|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완료    | 개발중 | 신청중 |
| 1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|
| 2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     |     |

※ 주관기관이 신청시점에서 '과제현황' 중 해당사항에 체크(√) 표시/ 참여기업이 있을 경우 별도로 추가하여 작성

7. 연구기자재·설비보유 현황

| 구분         | 연구기자재 및 시설명 | 규격 | 공급<br>가액<br>(백만원) | 구입<br>년도 | 용도<br>(구입사유) | 보유기관<br>(참여형태)   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자사보유      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(주)우리회사<br>(주관기관) |
|            | 소계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공동장비<br>활용 |   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| 소계          |    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|

8. 개발기술 활용 및 사업화방안

- ※ 기술개발결과의 활용분야 및 활용방안을 구체적으로 서술
  - ※ 제품화 이후의 양산 계획, 방법 및 양산 제품의 마케팅 전략 등 생산 및 관료확보 방안을 객관적으로 서술
- 

9. 사업비 구성(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: 첫걸음 및 도약과제 작성 제외)

(단위 : 천원)

| 구분      |                  | 사업비 내역                  | 현금                          | 현물 | 계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|
| 직접비     | 인건비              | ○ 내부인력                  | - 3,000만원 × 1명 × 6개월 × 30%  |    |  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○ 신규인력                  | - 2,500만원 × 2명 × 12개월 × 50% |    |   |
|         | 연구장비<br>·<br>재료비 | ○ 연구시설·장비비              | - 규격 및 수량 단가 등 작성           |    |  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○ 시약·재료구입비<br>및 시험분석료   | - 규격 및 수량 단가 등 작성           |    |   |
|         |                  | ○ 시작용·시제품·<br>시험설비 제작경비 | - 규격 및 수량 단가 등 작성           |    |   |
|         | 연구활동비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
| 위탁연구개발비 | -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
| 간접비     | 간접비              | -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
| 계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|

## <참고> R&D 사업비 작성요령

※ 사업비 산정은 과제선정 평가 시 주요 검토사항으로 기술개발과 직접 관련이 있는 사업비 항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. 과대 계상된 사업비는 평가 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규정에 맞도록 적정하게 책정하시기 바랍니다.

| 구분       |  | 산정 또는 비율제한  |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|---|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직접비      | 인건비  |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구분</th> <th>세부 산정기준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연봉제 적용기관</td> <td>연봉총액/12 × 참여기간 × 참여율</td> </tr> <tr> <td>연봉제 비적용기관</td> <td>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/12 × 참여기간 × 참여율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p>※주관기관 과제책임자는 30% 이상, 참여연구원은 10% 이상 참여를 원칙으로 함<br/>                 ※ 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금 포함해서 산정가능<br/>                 ※ 근무년수가 1년 미만인 자 등 전년도 연말 정산기준 급여총액을 알 수 없는 정규직원의 인건비는 「월 평균급여액 × 참여기간 × 참여율」로 산정하여 적용<br/>                 ※ 내부인력은 현물계상 원칙(단, 기술개발의 대부분류가 지식서비스 분야인 경우 신청인건비의 50% 이내에서 현금계상 가능)<br/>                 ※ 신규채용은 100% 현금계상 가능<br/>                 ※ 과제수행에 참여한 외부연구원의 인건비는 현금으로 계상할 수 있으며,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라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실지금액을 해당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. 다만,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고, 기업, 대학, 국·공립연구기관의 정규직원은 인건비(외부)로 계상 불가</p> | 구분 | 세부 산정기준 | 연봉제 적용기관 | 연봉총액/12 × 참여기간 × 참여율 | 연봉제 비적용기관 |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/12 × 참여기간 × 참여율 |
|          | 구분   | 세부 산정기준   |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연봉제 적용기관   | 연봉총액/12 × 참여기간 × 참여율  |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| 연봉제 비적용기관  |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/12 × 참여기간 × 참여율   |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연구장비·재료비 | <p>○연구시설·장비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3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·장비 및 임차료(연구공간 제외)</li> <li>※ 기보유 기자재 및 시설은 장부가의 20%이내 현물계상 가능</li> <li>※ 제품·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인건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% 이내에서 계상</li> </ul> <p>○시약·재료구입비 및 시험분석료(임상비용 포함), 전산처리 및 관리비<br/>                 ○시작품·시제품·시험설비 제작경비</p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|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연구활동비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수용비 및 수수료 :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·복사·인화, 사무용품비 등</li> <li>※ 기술정보수집비 및 전문가 활용비 : 전문가 활용내용을 작성·제출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받은 경우에 한함</li> <li>※ 국내 출장여비 및 회의비 등      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숙박·교통·식대 등의 영수증 필수</li> <li>- 회의비 : 사전 원인행위 및 회의록 필수</li> </ul> </li> </ul> |   |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위탁연구개발비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연구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 할 경우 계상</li> <li>※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% 이내</li> </ul>  |   |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간접비      | 간접비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※ 직접비의 5% 이내, 지식재산권 출원·등록비, 기술자로 임치비, 회계감사비, 연구실 안전·보안관리비 등</li> </ul>   |    |         |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